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①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 수준을 낮추어 보험료를 좀 더 낮게 설계가능한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종신보험입니다.
②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은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계약 후 10년이하 연복리 3.5%, 10년초과 연복리 2.0%를 적용이율로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전환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간편심사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①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입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간편심사형은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Q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무엇인가요?

A : ①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②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③ ②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④ ②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계약자적립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납입완료보너스 및 버팀목자금 제공으로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과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Q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의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 ①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합계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회사가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이내에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와는 별개로 (무)추가납입특약을 통해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중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③ 추가납입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예정계약자적립액 -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의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 누적액」 중 적은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와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의 합산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총액의 100%(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로 합니다.

나.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1) 총 한도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주계약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 다만,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와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의 합산 납입한도는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총액의 100%(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로 합니다.

(2) 매년 납입 가능한 한도

주계약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3)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으면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Q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의 납입완료보너스는 어떻게 되나요?

A : 회사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계약에 대하여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다음의 「납입완료보너스」를 「보너스 발생후적립액」에 가산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를 가산합니다. 다만, 납입완료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text{납입완료보너스} = \text{주계약 기본보험료} \times \text{납입완료보너스비율} \times (12 \times \text{보험료 납입기간(년수)})$$

가.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나. 납입완료보너스비율: 9.5%

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합니다.

Q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의 버팀목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회사는 유지중인 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에 다음의 「버팀목자금」을 「보너스 발생후적립액」에 가산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버팀목자금을 가산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text{버팀목자금} = \text{주계약 기본보험료} \times \text{버팀목자금비율} \times (12 \times \text{보험료 납입기간(년수)})$$

가. 버팀목자금비율: 17.5%

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버팀목자금을 계산합니다.

다. 12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에 「버팀목자금」을 「보너스 발생 후적립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Q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A : ①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일 또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일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및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다만,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한 금액)과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보험료 납입액과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중도인출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 가능합니다.
- (가)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
- (나) 주계약 보너스 발생후적립액(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 가능)
- (다)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주계약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 가능)
- ④ ①에서 ③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해당액 중 적은 금액」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전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⑤ 중도인출 이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Q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의 월대체보험료는 무엇인가요?

A :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당 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Q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① 일반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을 회사에 신청할 경우 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약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무배당 추가납입특약이 부가된 경우 해당 특약 전부를 전환합니다.

가. 최초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7년이상 경과한 계약

(다만,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이후)

나. 피보험자 보험나이 50세 이상 80세 이하인 계약

- 다.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잔액이 없는 계약
- 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계약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전환 가능)
- 마.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 또는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 ②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가입금액보증형)은 종전보험이 보장성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③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중 가입금액보증형의 경우 “신연금전환 가입금액” 및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적용하여 연금으로 전환되며, 전환일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 ④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가입금액보증형 제외),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의 전부를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며, 전환일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 ⑤ 연금전환을 신청하여 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은 종전보험으로 다시 환원할 수 없습니다.
- ⑥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후 특약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조항은 종전보험의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 ⑦ 연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
- 가. 이 특약은 종전보험의 가입시점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의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이 '가'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 '나'에 따라 회사는 「종전보험 가입시점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과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을 비교하며, 이 경우 경험 연금사망률의 가입연령 및 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구분	가입연령	개시연령
종전보험 가입시점 경험 연금사망률	종전보험 가입시점 피보험자 연령	연금개시시점 피보험자 연령
연금개시시점 경험 연금사망률	연금개시시점 피보험자 연령	연금개시시점 피보험자 연령

-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이후 무배당 종신전환특약 또는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최초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확정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후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에 대한 공시이율은 신공시이율(연금Ⅳ)로 적용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입니다.

Q :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① 간편심사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을 회사에 신청할 경우 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약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무배당 추가납입특약이 부가된 경우 해당 특약 전부를 전환합니다.

가. 최초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7년이상 경과한 계약
(다만,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이후)

나. 피보험자 보험나이 50세 이상 80세 이하인 계약
 다.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잔액이 없는 계약

- ②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가입금액보증형)은 종전보험이 보장성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③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중 가입금액보증형의 경우 “신연금전환 가입금액” 및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적용하여 연금으로 전환되며, 전환일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 ④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가입금액보증형 제외),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의 전부를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며, 전환일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 ⑤ 연금전환을 신청하여 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은 종전보험으로 다시 환원할 수 없습니다.
- ⑥ 연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은 종전보험의 가입시점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의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간편심사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이 '가'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간편심사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나'에 따라 회사는 「종전보험 가입시점 회사의 간편심사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과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간편심사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을 비교하며, 이 경우 간편심사 연금사망률의 가입연령 및 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구분	가입연령	개시연령
종전보험 가입시점 간편심사 연금사망률	종전보험 가입시점 피보험자 연령	연금개시시점 피보험자 연령
연금개시시점 간편심사 연금사망률	연금개시시점 피보험자 연령	연금개시시점 피보험자 연령

※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확정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후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에 대한 공시이율은 신공시이율(연금Ⅳ)로 적용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입니다.

Q :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① 일반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유효한 종전보험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일 당시에는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종전보험의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이후)

나. 전환일 당시 종전보험에서 이 특약으로 전환되는 전환일시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계약(다만,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전환가능)

라.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또는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 ② ①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 기본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종전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①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종전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가' 및 '나'에서 정한 자 중 1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신청 시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만15세 이상 80세 이하여야 합니다.
- 가. 종전보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나. 종전보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
- ④ ③의 '가' 또는 '나'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피보험자를 선택하는 경우 전환 전 피보험자 및 전환 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⑤ ③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종전보험 약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⑥ ⑤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회사는 전환일부터 이 특약의 약관에 따라 적립형 계약에 대하여 보장합니다. 종전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 중 전환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환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⑦ 계약자는 ⑥에 따른 전환일 전일까지 이 특약으로의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⑧ 이 특약으로의 전환 후 종전보험으로 다시 환원할 수 없습니다.
- ⑨ ③의 '가' 또는 '나'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종전보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종전보험의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에도 종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종전보험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또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 ⑩ ⑤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우 계약자는 종전보험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전환 후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전환할 때 종전보험의 특약보험료를 납입완료 하지 않았거나 종전보험의 일부를 전환하는 계약의 경우 전환 이후에도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⑪ ⑤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부터 종전보험의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 특약은 해지됩니다.
- ※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은 주계약을 가입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또는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신청시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의 피보험자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 후 적립액에 대한 공시이율은 신공시이율(저축Ⅳ)로 적용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입니다.

Q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 A : ① 일반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유효한 종전보험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일 당시에는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종전보험의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계약)
- 나. 전환일 당시 종전보험에서 이 특약으로 전환되는 전환일시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계약(다만,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전환 가능)

라.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또는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 ② ①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종전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가' 및 '나'에서 정한 자 중 1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종전보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나. 종전보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

- ③ ②의 '가' 또는 '나'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피보험자를 선택하는 경우 전환 전 피보험자 및 전환 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④ 계약자는 ⑦에 따른 전환일 전일까지 이 특약으로의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⑤ 이 특약으로의 전환 후 종전보험으로 다시 환원할 수 없습니다.

- ⑥ ②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종전보험 약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⑦ ⑥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회사는 전환일부터 이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하고 종전보험은 전환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⑧ ②의 '가' 또는 '나'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종전보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종전보험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또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 ⑨ 전환할 때 종전보험의 특약보험료를 납입완료 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전환 이후에도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⑩ ⑦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일부터 종전보험의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해지됩니다.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은 주계약을 가입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으로 전환 이후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또는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으로 전환신청시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피보험자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 보험과의 비교 (간편심사형에 한함)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

상품명		(무)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간편심사형			(무)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일반형																		
상품구분		간편심사			일반심사																		
보장 내용	기본 형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 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 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보험가입금액의</th></tr><tr><td>기본 보험금</td><td>계약일 ~ 종신까지</td><td>100%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할 경우 50%)</td></tr></table>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금	계약일 ~ 종신까지	100%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할 경우 50%)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보험가입금액의</th></tr><tr><td>기본 보험금</td><td>계약일 ~ 종신까지</td><td>100%</td></tr></table>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금	계약일 ~ 종신까지	100%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금	계약일 ~ 종신까지	100%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할 경우 50%)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금	계약일 ~ 종신까지	100%																					
보증 형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 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 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기 본 보 험 금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보험가입금액의</th></tr><tr><td rowspan="3">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td><td>100% (다만, 계약일부 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 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할 경우 50%)</td></tr><tr><td>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 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td><td>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 액</td></tr><tr><td>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종신까지</td><td>200%</td></tr></table>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다만, 계약일부 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 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할 경우 50%)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 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 액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종신까지	200%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보험가입금액의</th></tr><tr><td rowspan="3">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td><td>100%</td></tr><tr><td>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 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td><td>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 액</td></tr><tr><td>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종신까지</td><td>200%</td></tr></table>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 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 액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종신까지	200%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다만, 계약일부 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 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할 경우 50%)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 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 액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종신까지	200%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 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 액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 약해당일 ~ 종신까지	200%																					
계약승낙 여부		일반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 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 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보험 료 예시	기본 형	40세	77,900원	72,200원	40세	75,900원	70,100원																
		50세	90,400원	83,200원	50세	88,200원	81,000원																
		60세	106,400원	96,700원	60세	103,800원	94,500원																
	보증 형	40세	140,400원	130,100원	40세	136,600원	126,400원																
		50세	159,800원	150,800원	50세	157,300원	147,600원																
		60세	174,600원	169,800원	60세	174,400원	168,500원																
기준		종신, 7년납, 월납, 가입금액 1,000만원			종신, 7년납, 월납, 가입금액 1,000만원																		

2

보험가입자격요건

가. 보험의 종류

- 종신보험, 순수보장형, 개인형
- 표준형(기본형, 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기본형, 체증형)

나. 보험종목의 명칭

보 험 종 목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일반형	표준형	기본형
			체증형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기본형
			체증형
		표준형	기본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체증형

※ 다만, 표준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 산출시 해약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운영합니다.

다. 보험기간: 종신

라. 보험료 납입기간: 7년납

마.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바. 가입나이: [일반형] 만15세 ~ 최대 70세 / [간편심사형] 30세 ~ 최대 70세

사. 보험가입한도

구 분		가입한도	비고
주계약: 일반형		500만 ~ 30억	※체증형은 20억 한도
주계약: 간편심사형		100만 ~ 20억	※체증형은 10억 한도
선택 특약	(무)고도장해특약(장해80%이상)	100만 ~ 1,000만	
	(무)재해사망특약	100만 ~ 5억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주계약보험료의 10배	※ 중복선택 불가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6대질병형)		

※ 보험가입한도는 선택한 주계약의 보험종목과 가입금액 및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건강진단 여부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일반형은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간편심사형은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1. 상품의 구성

가. 일반형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일반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기본형)
일반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체증형)
- (주계약)
- + 무배당 추가납입특약
- (의무부가특약)
- +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6대질병형)
- (선택특약)
- + 무배당 고도장해특약(장해80%이상)
- (선택특약)
-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선택특약)
- ※ 제도성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인수부적합자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 무배당 종신전환특약

나. 간편심사형

-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기본형)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체증형)
- (주계약)
- + 무배당 추가납입특약
- (의무부가특약)
- ※ 제도성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인수부적합자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가. 주계약

(1) 일반형

[기본형]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구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금	계약일 ~ 종신까지	100%

[체증형]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보험가입금액의</th></tr><tr><td rowspan="3">기본 보험금</td><td>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td><td>100%</td></tr><tr><td>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td><td>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td></tr><tr><td>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td><td>200%</td></tr></table>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금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200%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금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200%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 금액의 합계(다만,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4.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추가납입보험료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5. 계약자적립액
가.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납입완료보너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및 버팀목자금에서 월 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제외합니다.
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보너스 발생후적립액으로 구성됩니다.
6.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

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을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 전 기본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합니다.

(2) 간편심사형

[기본형]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구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금	계약일 ~ 종신까지 100%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50%)

[체증형]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구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금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50%)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2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200%

- (주) 1.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기본보험금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의 50%로 합니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 금액의 합계(다만,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4.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추가납입보험료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5. 계약자적립액
가.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납입완료보너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및 버팀목자금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제외합니다.
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보너스 발생후적립액으로 구성됩니다.
6.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을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 전 기본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나. 무배당 고도장해특약(장해80%이상)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도장해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주) 1.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사망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주) 1.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라.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3대질병형]

급 부 명 칭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내 용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약관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대질병형]

급 부 명 칭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내 용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보장개 시일 이후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간질한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게 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약관 제11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마.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내용
종신 연금형	정액형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지급 (10년/15년/20년/25년/30년/100세 보증지급)
	가입금액 보증형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신연금전환 가입금액”과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신연금전환 가입금액”과 이미 지급된 누적연금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된 누적연금액이 “신연금전환 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없음)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일 이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또한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특약의 보험료를 신공시이율(연금Ⅳ)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2. “전환일시금”이란 종전보험의 지급금(종전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계약대출 상환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무배당 추가납입특약이 부가된 경우 해당 특약의 해약환급금 전부를 포함합니다. 종전보험의 전환일시금을 이 특약의 보험료로 하며, 신공시이율(연금Ⅳ)로 전환일부터 적립됩니다.

3. 연금액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다만,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으로 전환 후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4. “신연금전환 가입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최저한도로 하여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신공시이율(연금Ⅳ), 피보험자 성별 및 전환나이에 따라 계산된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연금전환 가입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종전보험 사망보험금(가산적립액,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플러스자금 적립액 제외)」 이내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이 「연금개시시점의 종전보험 사망보험금(가산적립액,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플러스자금 적립액 제외)」 보다 큰 경우 신연금전환 가입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으로 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10년 보증지급형, 15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25년 보증지급형, 30년 보증지급형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9.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확정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10.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의 신공시이율(연금Ⅳ)로 계산한 금액을 드리고 2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경과 1년 동안의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11.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12.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율(연금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1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이 「종전보험 가입시점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4.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바.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내용
종신연금형	정액형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지급 (10년/15년/20년/25년/30년/100세 보증지급)
	가입금액형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신연금전환 가입금액”과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보증형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신연금전환 가입금액”과 이미 지급된 누적연금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된 누적연금액이 “신연금전환 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없음)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일 이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또한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특약의 보험료를 신공시이율(연금Ⅳ)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2. “전환일시금”이란 종전보험의 지급금(종전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계약대출 상환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무배당 추가납입특약이 부가된 경우 해당 특약의 해약환급금 전부를 포함합니다. 종전보험의 전환일시금을 이 특약의 보험료로 하며, 신공시이율(연금Ⅳ)로 전환일부터 적립됩니다.
3. 연금액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가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다만,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으로 전환 후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4. “신연금전환 가입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최저한도로 하여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신공시이율(연금Ⅳ), 피보험자 성별 및 전환나이에 따라 계산된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연금전환 가입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종전보험 사망보험금(가산적립액,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플러스자금 적립액 제외)」 이내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이 「연금개시시점의 종전보험 사망보험금(가산적립액,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플러스자금 적립액 제외)」보다 큰 경우 신연금전환 가입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으로 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10년 보증지급형, 15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25년 보증지급형, 30년 보증지급형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9.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확정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10.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의 신공시이율(연금Ⅳ)로 계산한 금액을 드리고 2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경과 1년 동안의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11.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12.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율(연금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13. 이 특약의 종신연금형 연금액은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적용하는 연금사망률(이하 “간편심사 연금사망률”이라 합니다)을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1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간편심사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이 「종전 보험 가입시점 회사의 간편심사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 회사의 간편심사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5.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사. 무배당 적립형전환특약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의 5배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5. 기타 용어의 정의 타. 계약자적립액」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을 때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이 특약으로 전환 후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2. 신공시이율(저축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저축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아. 무배당 종신전환특약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기본보험금] 중 큰 금액	
		구 분	보험가입금액의
		기본보험금	100%

- (주)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 전 기본보험금에 추가보험료를 합산합니다.
3.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보험료 납입이 있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합산합니다.
4.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합계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14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액”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바. 계약자적립액」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을 때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자. 무배당 추가납입특약

구 분		세 부 사 항
한도	총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 12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 다만,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와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의 합산 납입한도는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총액의 100%(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로 합니다.
	연간	주계약 기본보험료 × 12 ×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납입가능기간		주계약 보험기간 이내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추가계약자적립액(다만, 추가계약자적립액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일 또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추가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총 인출금액(주계약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포함)은 인출 당시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다만, 특약보험료 제외)와 추가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가.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보험금 부지급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보험료 산출기초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및 (무)추가납입특약의 적용이율은 계약 후 10년이하 연복리 3.5%, 10년초과 연복리 2.0%입니다. 또한 각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75%(다만, (무)적립형전환특약의 경우 연복리 2.5%, (무)종신전환특약의 경우 연복리 2.0%, (무)신연금전환특약 및 (무)간편신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적용이율 없음)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 분		40세	50세	60세
무배당 예정 경험 사망률	남자	0.000920	0.002480	0.005600
	여자	0.000570	0.001040	0.002140
무배당 예정 간편고지 사망률Ⅲ	남자	0.001047	0.002823	0.007853
	여자	0.000813	0.001483	0.003385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적용해약률

Q : 적용해약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약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에 적용한 적용해약률은 보험료 납입기간 및 경과기간별로 상이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연 0% ~ 연 9.4%를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준형에는 적용해약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리 KDB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가. 일반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기본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7년납, 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2,277,000	0	0.0%	2,103,000	0	0.0%
6개월	4,554,000	118,607	2.6%	4,206,000	118,822	2.8%
9개월	6,831,000	1,085,161	15.9%	6,309,000	1,015,232	16.1%
1 년	9,108,000	2,051,715	22.5%	8,412,000	1,911,643	22.7%
2 년	18,216,000	6,042,929	33.2%	16,824,000	5,613,786	33.4%
3 년	27,324,000	10,163,643	37.2%	25,236,000	9,437,429	37.4%
5 년	45,540,000	18,815,072	41.3%	42,060,000	17,469,215	41.5%
7 년	63,756,000	62,164,820	97.5%	58,884,000	57,688,980	98.0%
10 년	63,756,000	78,943,448	123.8%	58,884,000	73,239,325	124.4%
15 년	63,756,000	85,358,527	133.9%	58,884,000	79,184,194	134.5%
20 년	63,756,000	92,470,775	145.0%	58,884,000	85,742,655	145.6%
30 년	63,756,000	109,316,654	171.5%	58,884,000	101,091,698	171.7%
40 년	63,756,000	129,674,718	203.4%	58,884,000	119,860,267	203.6%
50 년	63,756,000	153,315,820	240.5%	58,884,000	141,895,744	241.0%
60 년	63,756,000	179,162,237	281.0%	58,884,000	166,920,895	283.5%

나. 일반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체증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7년납, 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98,000	0	0.0%	3,792,000	0	0.0%
6개월	8,196,000	479,036	5.8%	7,584,000	459,215	6.1%
9개월	12,294,000	2,244,804	18.3%	11,376,000	2,095,572	18.4%
1 년	16,392,000	4,010,572	24.5%	15,168,000	3,731,929	24.6%
2 년	32,784,000	11,306,643	34.5%	30,336,000	10,493,857	34.6%
3 년	49,176,000	18,845,715	38.3%	45,504,000	17,480,286	38.4%
5 년	81,960,000	34,693,857	42.3%	75,840,000	32,163,643	42.4%
7 년	114,744,000	114,163,680	99.5%	106,176,000	105,781,720	99.6%
10 년	114,744,000	145,729,469	127.0%	106,176,000	134,920,263	127.1%
15 년	114,744,000	159,349,846	138.9%	106,176,000	147,424,931	138.8%
20 년	114,744,000	174,371,225	152.0%	106,176,000	161,143,788	151.8%
30 년	114,744,000	208,852,490	182.0%	106,176,000	192,576,223	181.4%
40 년	114,744,000	250,664,595	218.5%	106,176,000	231,197,147	217.7%
50 년	114,744,000	299,340,214	260.9%	106,176,000	276,669,823	260.6%
60 년	114,744,000	352,816,744	307.5%	106,176,000	328,484,662	309.4%

다.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기본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7년납, 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2,337,000	0	0.0%	2,166,000	0	0.0%
6개월	4,674,000	131,036	2.8%	4,332,000	126,536	2.9%
9개월	7,011,000	1,127,804	16.1%	6,498,000	1,051,054	16.2%
1 년	9,348,000	2,124,572	22.7%	8,664,000	1,975,572	22.8%
2 년	18,696,000	6,243,643	33.4%	17,328,000	5,796,643	33.5%
3 년	28,044,000	10,472,215	37.3%	25,992,000	9,721,715	37.4%
5 년	46,740,000	19,354,857	41.4%	43,320,000	17,971,357	41.5%
7 년	65,436,000	63,906,420	97.7%	60,648,000	59,335,560	97.8%
10 년	65,436,000	81,151,108	124.0%	60,648,000	75,334,083	124.2%
15 년	65,436,000	87,794,090	134.2%	60,648,000	81,450,463	134.3%
20 년	65,436,000	95,157,174	145.4%	60,648,000	88,193,429	145.4%
30 년	65,436,000	112,605,660	172.1%	60,648,000	104,061,774	171.6%
40 년	65,436,000	133,583,783	204.1%	60,648,000	123,424,637	203.5%
50 년	65,436,000	157,763,987	241.1%	60,648,000	146,012,569	240.8%
60 년	65,436,000	184,079,229	281.3%	60,648,000	171,557,889	282.9%

라.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체증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7년납, 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4,212,000	0	0.0%	3,903,000	0	0.0%
6개월	8,424,000	501,286	6.0%	7,806,000	476,643	6.1%
9개월	12,636,000	2,320,179	18.4%	11,709,000	2,163,215	18.5%
1 년	16,848,000	4,139,072	24.6%	15,612,000	3,849,786	24.7%
2 년	33,696,000	11,659,643	34.6%	31,224,000	10,822,072	34.7%
3 년	50,544,000	19,408,215	38.4%	46,836,000	18,006,857	38.4%
5 년	84,240,000	35,703,857	42.4%	78,060,000	33,114,429	42.4%
7 년	117,936,000	117,463,920	99.6%	109,284,000	108,904,980	99.7%
10 년	117,936,000	149,947,812	127.1%	109,284,000	138,929,237	127.1%
15 년	117,936,000	164,002,956	139.1%	109,284,000	151,851,273	139.0%
20 년	117,936,000	179,499,829	152.2%	109,284,000	166,041,029	151.9%
30 년	117,936,000	215,264,342	182.5%	109,284,000	198,489,935	181.6%
40 년	117,936,000	258,287,496	219.0%	109,284,000	238,332,488	218.1%
50 년	117,936,000	308,015,837	261.2%	109,284,000	284,922,713	260.7%
60 년	117,936,000	362,403,121	307.3%	109,284,000	337,793,590	309.1%

- (주) 1.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미상각 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예시금액은 관련세법에 의한 세금공제 전 기준입니다.
3. 상기 예시금액은 납입완료보너스 및 버팀목자금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4. 주계약은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 연복리 3.5%, 10년초과 연복리 2.0%입니다.
5. 상기 해약환급금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한달을 30일로 가정하여 산출한 값입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실제 일수를 적용하므로, 해약환급금이 상기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신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해지됩니다.
7.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7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월납, 40세 기준]

상 품 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비고	
(무)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일반형	기본형	종신	7년납	남자	136.9%	10,000	-	
		체증형			여자	142.9%			
	간편심사형	기본형			남자	127.5%			
					여자	131.6%			
		체증형			남자	123.9%			
					여자	129.5%			
					체증형	남자			116.5%
						여자			120.1%